

단체협약 신규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
<p>제3조(조합원의 범위) ①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(이하 "조합원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6.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</u></p> <p><생략></p>	<p>제3조(조합원의 범위) ①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(이하 "조합원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6. 삭 제 (2019.6.17)</u></p> <p><생략></p>
<p>제4조(조합가입) 본 협약 체결(1988.11.8) 후 입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3조 제1항 단서의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은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.</p>	<p>제4조(조합가입) 본 협약 체결(1988.11.8) 후 입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3조 제1항 단서의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은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. <u>단,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에서 전한 임용된 직원의 경우 2003년 5월 29일 이후 입사한 직원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.</u></p>
<p>제24조(인사원칙)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시키지 아니하며 해임, 감봉, 견책 등의 불이익 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.</p> <p><생략></p>	<p>제24조(인사원칙)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시키지 아니하며 해임, <u>정직</u>, 감봉, 견책 등의 불이익 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.</p> <p><생략></p>
<p>제26조의2(리프레시 휴직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6개월 또는 1년간의 리프레시휴직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속 10년 이상자 : 휴직기간 6개월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월기준급과 월역량급의 80% 지급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속 20년 이상자 : 휴직기간 1년 <u>(월기준급과 월역량급의 80% 지급)</u> 	<p>제26조의2(리프레시 휴직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6개월 또는 1년간의 리프레시휴직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속 10년 이상자 : 휴직기간 6개월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월기준급과 월역량급을 합산한 금액의 80% 지급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속 20년 이상자 : 휴직기간1년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월기준급과 월역량급을 합산한 금액의 80% 지급)</u></p>
<p>제31조(명예퇴직) 삭 제 (2015.11.16)</p>	<p>제31조(희망퇴직) ① <u>회사는 정년퇴직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 중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망자에 한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희망퇴직을 시킬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임금피크제 최초 도래직원</u> <u>중대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</u> <p>② <u>희망퇴직은 매분기 시행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(안)
<p>제40조(부당공제의 금지)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호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 <p><생략></p> <p>7. 주택자금 대부금(생활안정 및 긴급가계자금 대부금 포함) 및 상환 학자금 대부금</p> <p><생략></p>	<p>제40조(부당공제의 금지)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호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 <p><생략></p> <p>7.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아 공제하기로 약정한 대부금</p> <p><생략></p>
<p>제49조(명예퇴직금) 삭제(20151116)</p>	<p>제49조(희망퇴직금) ① 회사는 제31조에 의거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월기준급과 월역량급을 합한 금액에 제2항 내지 제3항의 산정월수와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② 산정월수는 퇴직익월부터 정년퇴직일 5년 이내는 잔여월수 매 2월당 1월로 계산하고, 5년을 초과한 10년까지는 5년까지의 잔여월수에 5년을 초과하는 잔여월수 매 4월당 1월을 가산하여 산출하며 최대 4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잔여월수 계산시 4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.</p> <p>③ 지급률(%)은 $100 + [55 - \{(20/45) \times \text{산정월수}\}]$로 적용한다.</p> <p>④ 장애3급 이상 판정으로 인한 공상자가 희망퇴직시 보상금(1억원 또는 1.5억원)은 희망퇴직금 지급으로 같음한다.</p>
<p>제62조(휴가) ① <생략></p> <p>② 제1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연차휴가 :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는 연간 1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. 다만,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할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, 1년을 초과 2년 미만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에서 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부여한다.</p> <p><생략></p> <p><신설></p> <p>2~4 <생략></p> <p>5. 청원휴가</p> <p>가. 결혼 (1) <생략></p>	<p>제62조(휴가) ① <생략></p> <p>② 제1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연차휴가 :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는 연간 1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. 다만,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할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</p> <p><생략></p> <p>1의4(공상자 연차휴가 이월) 12월 복귀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복직년도 발생연차의 50%까지 다음해 상반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2~4 <생략></p> <p>5. 청원휴가</p> <p>가. 결혼 (1) <생략></p>

현 행	개정(안)
<p>(2) 자녀/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: 1일 [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일].</p> <p>나~바. <생략> <신설></p>	<p>(2)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: 1일 [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일].</p> <p>(3) 자녀 : 3일(자녀결혼일과 그날 직전후 1일)</p> <p>나~바. <생략> 사. 건강검진 : 연 1일(건강검진일 당일 限) [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일]</p>
<p>제 81 조(자녀 학비 지원) 회사는 조합원이 순직한 경우와 공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취학 자녀에게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의 학비를 지원한다. 지원기간은 당해 조합원이 정년 퇴직 했을 시점까지로 한다. 단, 대학학자금의 경우 2014.6.1 이전에 순직 또는 공상 퇴직한 조합원에 한하여 지원한다.</p>	<p>제 81 조(자녀 학비 지원) 회사는 조합원이 순직한 경우와 공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취학 자녀에게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의 학비를 지원한다. 지원기간은 당해 조합원이 정년 퇴직 했을 시점까지로 한다.</p>
<p>제 112 조(정년 및 재고용) ① 직원의 정년은 2016년 1월 1일부터 만 60 세로 하며, 정년 퇴직시점은 매월 단위로 산정한다.</p> <p>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이 정년퇴직하는 경우 기 도입된 '정년퇴직 후 재고용' 제도를 시행하여 회사의 선발심사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토록 하며, 재고용규모 및 기간, 근로조건 등은 노사간 별도로 정한다.</p>	<p>제 112 조(정년 및 재고용)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 세로 하며, 정년 퇴직시점은 매월 단위로 산정한다.</p> <p>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이 정년퇴직하는 경우 '정년퇴직 후 재고용' 제도를 시행하여 회사의 선발심사 절차를 거쳐 KT에 재취업토록 하며, 재고용규모 및 기간, 근로조건 등은 노사간 별도로 정한다.</p>